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4. 13 선고 2022가단56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학수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3. 16.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5.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 3. 18. 접수 제12538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B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아래 표의 금융기관인 기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액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연장된 기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원)
1	2013. 10. 11.	42,500,000 (39,950,000감액)	2014. 10. 10. (2021. 3. 5.)	D은행	50,000,000
2	2015. 5. 27.	93,500,000	2016. 5. 26. (2021. 5. 21.)	E은행	110,000,000
3	2015. 6. 19.	63,750,000 (58,400,000감액)	2016. 6. 17. (2021. 6. 11)	D은행	75,000,000
4	2020. 10. 29.	19,000,000	2025. 10. 27.	F은행	20,000,000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B에 대하여 G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정보 등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등에는 B는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B는 'C'의 사업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2020. 11. 27.경 신용관리정보 등록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1. 7. 22. D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94,567,332원(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39,716,822원,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94,993,950원, 제3 보증약정에 따라 59,856,560원), 2022. 1. 20. F은행에 제4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19,402,278원 합계 213,969,61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잔존하는 보증잔액에 대한 위약금 합계 621,430원, 대지급금 잔액 411,954원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B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2차전104931호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2022. 3. 21. 'B는 원고에게 215,002,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22. 4. 7.경 확정되었다.

다. 전세권설정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

(1) 피고는 B의 처남으로, 1999. 2. 19.경 피고의 어머니이자 B의 장모인 H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 및 전출하였다가 2010. 4. 2.경 다시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곳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다.

(2) B는 2021.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1. 3. 18. 접수 제12538호로,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2020. 4. 2.부터 2030. 4. 2.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은 피고와 B 사이의 2020. 3. 15.자 전세권설정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전세권설정계약 일자인 2020. 3. 15. 기준 B의 적극재산 합계는 770,344,700원 상당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소극재산 합계는 794,291,976원으로 아래 표2 기재와 같다(표2에서 순번 11번 I에 대한 채무를 제외한 금액, 위 전세권설정등기일인 2021. 3. 18. 기준 B의 소극재산은 표2 기재 합계 819,291,976원이다).

[표1]

순번	대상물건	가격	비고
1	충북 영동군 J 전 1223㎡	77,049,000	갑제8호증
2	충북 영동군 K 답 503㎡	50,350,000	갑제8호증
3	충북 영동군 L 공장용지 2307㎡	196,095,000	갑제7호증
4	충북 영동군 L 지상 건물 M,N동	275,499,300	갑제7호증
5	충북 영동군 L 지상 건물 O동	54,756,000	갑제7호증
6	충북 영동군 L 지상 건물 P동	멸실	갑제7호증
7	충북 영동군 L 지상 건물 Q동	1,625,400	갑제7호증
8	충북 영동군 L 지상 제외건물동	16,000,000	갑제7호증
9	익산시 R 대 105㎡	28,980,000	갑제9호증
10	익산시 S빌라 T호	65,000,000	갑제9호증 (이 사건 부동산)
11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주행거리: 271796)	4,990,000	갑제12호증
합계		770,344,700	

[표2]

순번	채권자	채권액	비고
1	F은행	310,883,386	갑제10호증
2	U조합	30,000,000	갑제11호증
3	V조합	40,000,000	갑제13호증의 1
4	근로복지공단	6,300,000	갑제13호증의 2
5	D은행	37,994,522	갑제13호증의 3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413,566	갑제13호증의 4
7	원고	213,969,610	갑제13호증의 7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6,911,399	갑제13호증의 5
9	충북신용보증재단	7,794,907	갑제13호증의 6
10	W(주)	12,024,586	갑제5호증의 1
11	I	25,000,000	갑제5호증의 8
12	X센터	9,000,000	갑제11호증
13	피고 A	50,000,000	갑제14호증
합계		819,291,976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0. 3. 15.경에는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B는 자금난으로 인해 2020. 8.경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2020. 11.경부터 C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다가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8개월 만인 2020. 11. 27.경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B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적극재산 합계는 770,344,700원 상당이고, 소극재산 합계는 794,291,976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5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채무자인 B도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B는 인척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은 실제 전세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채 체결된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상당 기간 지내오다가 2020. 3. 15.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B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21. 3. 18.경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점(전세권설정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일 뿐더러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제3자의 중개 없이 피고와 B 사이에서만 작성된 점, 확정일자 등 계약서 작성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일인 2021. 3. 18.경 무렵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5.자로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교

별지